

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

2026학년도 사범학부 편입학자

교원자격 취득 이수 안내

<2026.2.19.>



백석대학교 사범학부

- 목 록 -

I	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세부기준	1
	1. 단수전공	
	2. 복수전공	
II	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종별 및 이수기준	3
	1. 학과별 자격종별	
	2. 단수전공을 통한 교원자격 취득	
	3. 복수전공을 통한 교원자격 취득	
	4. 특수교육과 교원자격 복수 취득	
III	전적대학 이수과목 학점 인정	8
	1. 인정과목	
	2. 인정대상	
	3. 인정기준	
IV	교직과목 일람표 및 필수 이수사항	9
	1. 교직과목 일람표	
	2. 학점 취득 외 필수 이수항목 안내	
	3. 교육봉사활동 안내	
V	각종양식	10
VI	기타 공지사항	10
VII	2026학년도 학과별 교육과정표 및 기본이수과목 일람표	11
	1. 편입생 졸업 최저이수 학점표	
	2. 학과별 교육과정표 및 기본이수과목 일람표	
VIII	2026학년도 편입생 학사안내	11

1. 단수전공

구분		2021학년도 이후 부터(2023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)
전공과목	유치원정교사 중등학교정교사 전문상담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 ※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육영역을 포함하지 않고 50학점 이상 이수
	특수학교(중등) 특수학교(초등) 특수학교(유치원) 정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80학점 이상 ▶ 특수교육(공통) 관련 전공 42학점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 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- 특수교육교육과정론(필수 과목) 포함 ▶ 표시과목(또는 자격종별)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치원/초등: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포함,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- 중등: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,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, 특수교육교육과정(기본 교육과정 교과(군) 3과목 7학점 이상 포함
교직과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3학점 이상 ▶ 교직이론(12), 교직소양(7), 교육실습(4)
성적기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■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
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적격판정 2회 이상(1·2차 검사, 총 2회, 연 1회 이수)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회 이상(연 1회 이수)
성인지 교육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4회 이상(학기별 1회 이수), 매학기 1회씩(4시간) 반드시 이수해야 함.
결격사유 확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성범죄 경력 미해당자(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서 제출자 일괄 조회) ■ 마약류 중독 미해당자(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서 제출 시 검사결과지도 같이 제출) ※ 마지막 학기에 별도 안내

2. 복수전공(주 전공과 복수전공 모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경우)

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전공과 복수전공 각각의 전공학점을 이수(교직과목은 주전공에서만 이수)

① 특수(중등) ⇔ 특수(초등) ⇔ 특수(유치원) 복수전공

- 특수교육(공통) 관련 전공과목 전체(42학점) 인정(주전공과 복수전공 합하여 총 42학점을 이수)
- 초등, 중등, 유치원 관련 표시과목 각각의 전공에서 38학점 이수

② 특수(유치원) ⇔ 유치원 복수전공

- 유치원 관련 전공과목 전체(50학점) 인정(주전공과 복수전공 합하여 총 50학점을 이수)
-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수

3. 참고사항

① 중복학점 인정(특수교육(공통) ⇔ 표시과목)

- 대상: 특수(초등), 특수(유치원), 특수중등(체육)
- 중복학점이 인정되는 과목 이수 시 최대 18학점까지 중복학점 인정
- 특수교육과 특수(초등), 유아특수교육과와 특수체육교육과는 표시과목영역과 특수교육(공통) 영역 모두에서 상호 중복 인정(단, 18학점 이내)
- 특수교육 관련 학과 복수전공 시 중복학점은 주전공에서만 인정함
- ※ **특수중등(국어) 복수취득 또는 복수전공자는 특수교육(공통) 영역의 중복학점 인정 없이 42학점 모두 이수해야함.**

② 전적대학 학점인정 범위

- 기본이수과목: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과목이 기본이수과목과 동일한 경우 인정
- 복수전공 시 전적대학 학점인정은 주전공과 복수전공 합하여 최대 60학점 이내
- 중복학점 인정: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과목이 중복학점 인정 과목과 동일하더라도 **중복학점 불인정(우리대학 입학 후 이수한 과목만 중복학점 인정)**
- ※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이라도 본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은 이수해야 함.

③ 평균점수 계산법

성적	환산점수(100점)	성적	환산점수(100점)
A+	97.5	C+	77
A	92	C	72
B+	87	D+	67
B	82	D	62
		F	0

$$\text{환산평균} = \frac{\sum(\text{과목별 취득성적의 환산점수} \times \text{과목별 학점수})}{\text{수강신청 총 학점수}}$$

※ Pass/Fail 과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

II

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종별 및 이수기준

1. 학과별 자격종별

학과	자격종별	표시과목	비고
유아교육과	유치원 정교사(2급)	-	
특수교육과	특수학교(초등) 정교사(2급)	-	초등, 중등 복수 취득 가능 (단, 4학기 이내에 취득이 어려워 추가 학기 수강)
	특수학교(중등) 정교사(2급)	국어	
유아특수교육과	특수학교(유치원) 정교사(2급)	-	
특수체육교육과	특수학교(중등) 정교사(2급)	체육	

※ 교원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편입생은 교원자격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.

2. 단수전공을 통한 교원자격 취득

가. 이수기준

- 1) 전공과목 이수 시 반드시 기본이수과목 7과목(21학점)이상, 교과교육과목 3과목(8학점)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, 이수한 전공과목 중에는 기초교과군, 전공 핵심교과군, 심화교과군, 응용교과군 각 군별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.(이수한 전공과목의 평균은 100점 환산점수로 75점 이상, 교직과목의 평균은 100점 환산점수로 80점 이상이어야 함)
- 2) 균형교양 7학점 중 3학점은 종교적 가치이해 영역에서 이수
- 3) 학과별 이수기준

▣ 유아교육과

(기준:학점)

교양						전공 (기초교과, 핵심·심화·응용교과군 각 3학점 이상 포함)				교직				총계
교필				균형 교양	계	기본 이수	교과 교육	기타 전공	계	교직 이론	교직 소양	교육 실습	계	
채플과 섬김	사랑의 실천	백석 멘토링	기독교 소양											
2 이상	1 이상	1 이상	3 이상	4 이상	10 이상	21 이상	8 이상	?	50 이상	12 이상	7 이상	4 이상	23 이상	83 이상

※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전공과목인 '특수아동지도'는 교직소양과목인 '특수교육학개론'으로 대체 인정 가능하나, 해당 학점(3학점)만큼 전공학점이 차감됨.

[단, 졸업이수학점 확인 시에는 해당 이수구분(응용교과군)으로 인정됨]

※ **'?' 표시:** 정해진 이수기준은 없으며 각 영역(전공,교양,교직)별로 필수학점 이수정도에 따라 변경됨
예) 전공의 기본이수과목을 24학점, 교과교육과목을 9학점 이수하였을 경우 전공의 총합이 50학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타 전공학점은 1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

▣ 특수교육과, 유아특수교육과, 특수체육교육과

교양					전공 (기초교과, 핵심·심화·응용교과군 각 3학점 이상 포함)								교직				총계	
교필				균형 교양	계	특수공통			(학교급)표시과목			소계	교직 이론	교직 소양	교육 실습	계		
채플과 섬김	사랑의 실천	백석 멘토링	기독교 소양			기본 이수	기타	계	기본 이수	교과 교육	기타							계
2 이상	1 이상	1 이상	3 이상	4 이상	10 이상	21 이상	?	42 이상	21 이상	8 이상	?	38 이상	80 이상	12 이상	7 이상	4 이상	23 이상	113 이상

※ 특수교육과(초등), 유아특수교육과, 특수체육교육과에서 ‘(학교급)표시과목’ 과 ‘특수공통’ 으로 상호 인정되는 과목 수강 시 최대 18학점까지 중복인정(전적대학 인정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제외)

※ 특수중등(국어) 이수자(복수전공자, 또는 복수취득자 포함)는 중복학점 인정 없이 80학점 이수해야 함.

※ 교원자격무시험경정 시 전공과목인 ‘특수교육학’은 교직소양과목인 ‘특수교육학개론’으로 이수구분 변경 신청해야 함. 해당 학점(3학점)만큼 특수(공통) 학점이 차감됨.

[단, 졸업이수학점 확인 시에는 해당 전공 이수구분(기초교과군)으로 인정됨]

3. 복수전공을 통한 교원자격 취득

가. 교직 복수전공 신청

- 1) 대상: 2026학년도 편입생
- 2) 신청기간: 2026-2학기(2026학년도 편입생은 1학기에 복수전공을 신청 할 수 없음)
- 3) 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에 대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(임의 이수 시 자격증 취득 불가)

나. 복수전공을 통한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한 전공

대 상 학 부		자 격 종 별	비고
학 부	전 공		
기독교학부	상당학	전문상담교사(2급)	
사회복지학부	청소년학	전문상담교사(2급)	
사범학부	유아교육과	유치원정교사(2급)	
	특수교육과	특수학교(초등) 정교사(2급) 특수학교(중등) 정교사(2급)-국어	특수학교(중등) 정교사(2급)-국어 복수전공 또는 복수취득자는 주 전공에서도 중복학점인정 안됨
	유아특수교육과	특수학교(유치원) 정교사(2급)	
	특수체육교육과	특수학교(중등) 정교사(2급)-체육	

다. 이수기준

▣ 유아교육과 ⇔ 특수교육과, 특수체육교육과

교양	유아교육과 (기초교과, 핵심·심화·응용교과군 각 3학점 이상 포함)				특수교육과, 특수체육교육과 (기초교과, 핵심·심화·응용교과군 각 3학점 이상 포함)									교직	계
	기본 이수	교과 교육 영역	기타	계	특수공통			(학교급)표시과목				계			
					기본 이수	기타	소계	기본 이수	교과 교육 영역	기타	소계				
10 이상	21 이상	8 이상	?	50 이상	21 이상	?	42 이상	21 이상	8 이상	?	38 이상	80 이상	23	162 이상	

※ 특수교육과(초등), 특수체육교육과에서 ‘(학교급)표시과목’ 과 ‘특수공통’ 으로 상호인정되는 과목 수강 시 최대 18학점까지 중복인정

[특수중등(국어)는 중복학점 인정 불가로 특수공통(42,주전공+복수전공)+표시과목(주전공(38)+복수전공(38)) 이수해야함]

▣ 유아교육과 ⇔ 유아특수교육과

교양	유아교육과 (기초교과, 핵심·심화·응용교과군 각 3학점 이상 포함)				유아특수교육과 (기초교과, 핵심·심화·응용교과군 각 3학점 이상 포함)			교직	계
	기본 이수	교과교육 영역	기타	계	특수공통		계		
					기본이수	기타			
10 이상	21 이상	8 이상	?	50 이상	21 이상	?	42 이상	23 이상	124 이상

▣ 특수교육과 ⇔ 유아특수교육과, 특수체육교육과

교양	특수교육과, 유아특수교육과, 특수체육교육과 (기초교과, 핵심·심화·응용교과군 각 3학점 이상 포함)								특수교육과, 유아특수교육과, 특수체육교육과 (기초교과, 핵심·심화·응용교과군 각 3학점 이상 포함)				교직	계
	특수공통			(학교급)표시과목				계	(학교급)표시과목			계		
	기본 이수	기타	소계	기본 이수	교과 교육 영역	기타	소계		기본 이수	교과 교육 영역	기타			
10 이상	21 이상	?	42 이상	21 이상	8 이상	?	38 이상	80 이상	21 이상	8 이상	?	38 이상	23 이상	150 이상

※ 특수교육과(초등), 유아특수교육과, 특수체육교육과에서 ‘(학교급)표시과목’ 과 ‘특수공통’ 으로 상호 인정되는 과목 수강 시, 주전공에서만 최대 18학점까지 중복인정

[특수중등(국어)는 중복학점 인정 불가로 특수공통(42,주전공+복수전공)+표시과목(주전공(38)+복수전공(38)) 이수해야함]

▣ 유아특수교육과 ⇔ 특수체육교육과

교양	유아특수교육과, 특수체육교육과 (기초교과, 핵심·심화·응용교과군 각 3학점 이상 포함)								유아특수교육과, 특수체육교육과 (기초교과, 핵심·심화·응용교과군 각 3학점 이상 포함)				교직	계
	특수공통			(학교급)표시과목				계	(학교급)표시과목			계		
	기본 이수	기타	소계	기본 이수	교과 교육 영역	기타	소계		기본 이수	교과 교육 영역	기타			
10 이상	21 이상	?	42 이상	21 이상	8 이상	?	38 이상	80 이상	21 이상	8 이상	?	38 이상	23 이상	150 이상

※ 특수교육과(초등), 유아특수교육과, 특수체육교육과에서 ‘(학교급)표시과목’ 과 ‘특수공통’ 으로 상호 인정되는 과목 수강 시 주전공에서만 최대 18학점까지 중복인정

4. 특수교육과 교원자격 복수 취득

가. 취득자격

특수교육과에서는 「특수학교(초등) 정교사(2급)」과 「특수학교(중등) 정교사(2급)국어」 중 2개의 복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

나. 신청안내

특수교육과 재학생의 자격종별은 최초 특수학교(초등)정교사(2급)으로 등록되며, 복수취득 또는 중등 표시과목(국어)은 별도 표시과목 신청을 해야함(3월 중 교직과정 홈페이지 공지 예정)

다. 특수교육과 복수 취득 시 중복학점 인정 불가로 118학점(특수공통(42)+표시과목(초등(38)+중등(38))이수 해야 함.

Ⅲ 교원자격 취득 관련 전적대학 이수과목 학점 인정

1. 인정과목: 교직 및 전공과목 중 교과목명과 학점이 같은 과목

※ 교과목명이 같아도 학점 또는 교수요목이 다르면 인정 안됨.

2. 인정대상: 사범학부 편입학자

3. 인정기준

가. 교직과목

- 교직이론, 교육봉사활동: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(성적표에 성적 표기) 대로 동일하게 인정
- 교육실습: 편입한 학과와 동일한 자격종별의 교육실습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(면제)
 - 유아교육과: 유치원 정교사(2급)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인 경우(면제)
 - 특수교육관련학과: 특수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인 경우(면제)

나. 전공과목

- 1) 편입학한 학과와 전적대학의 학과(전공)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, 과목명과 학점이 동일한 경우에 인정함
 - 전적대학의 학과(전공)가 편입학한 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않고 유사할 경우 또는 학점이 동일하고 교과내용은 유사하나 과목명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의 유사과목(전공) 인정 확인을 통하여 가능
 - 유사과목을 인정받을 때에는 전적대학 이수과목의 교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전적대학의 수업계획서, 교과목 해설 등) 제출
 - 유사전공을 인정받을 때에는 전적대학 학과(전공)의 전공교육과정을 반드시 제출
- 2) 전적대학의 학과(전공)와 동일하지 않은 학과로 편입한 경우
 - 우리대학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였어도 인정불가
- 3) 전적대학 인정학점은 중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

다. 인정학점 제한

- 1) 전적대학의 교직 및 전공학점 인정은 우리대학의 편입생 인정학점 60학점(교무규칙 제68 조 9)이내이며, 우리대학에서 이수해야하는 졸업이수 학점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님.
- 2) 전적대학의 전공학점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대학의 편입생 졸업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함(아래의 편입생 졸업이수학점 기준 참조)

라. 제출서류

-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.
- 전적대학 학점인정서 1부[양식 4].
- 전적대학 수업계획서 과목별 각 1부(유사과목 인정 시).
- 전적대학 교육과정표 1부(유사전공 인정 시).

마. 제출기간: 4월 10일(금)까지(별도 공지 예정으로 교직과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
바. 제출처: 사범학부사무실(본부동 601호)

사. 인정결과 확인: 5월 중 교직과정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

IV 교직과목 일람표 및 필수 이수사항 안내

1. 교직과목 일람표

영역	과목	학점	과목 / 학점
교직이론	교육학개론	2	(9과목 / 18학점 중) 6과목 / 12학점 이상 이수
	교육심리	2	
	교육과정	2	
	교육평가	2	
	교육방법 및 교육공학	2	
	교육사회	2	
	교육철학 및 교육사	2	
	교육행정 및 교육경영	2	
	교사론	2	
*교직소양	교직실무	2	4과목 / 7학점 (2025학년도 편입학자부터 필수)
	특수교육학개론	2	
	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	2	
	디지털교육	1	
*교육실습	교육봉사활동	2(60시간)	2과목 / 4학점
	학교현장실습	2(4주)	
합계	-		12과목 / 23학점 이상 이수

* 표는 필수과목임.

※ 학교현장실습은 반드시 해당전공(과)에서 개설된 교과목 이수, 주전공으로만 실시

※ 교육봉사활동은 반드시 절차대로 이수 시에만 학점 취득 가능(교직과정 홈페이지 참조)

2. 교직과목 학점 외 필수 이수 사항

연번	구분	2021학번부터 (2023년도 이후 편입자부터 포함)	비고
1	교직 적·인성 검사	◦ 적격판정 2회(기본, 심화) 이상	
2	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	◦ 2회 교육이수	
3	성인지교육	◦ 4회 이상(반드시 매학기 참여) (매학기 미참여로 4회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)	
4	결격사유 확인	◦ 성범죄경력 미해당자 조회 ◦ 마약류중독 미해당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	

3. 교육봉사활동 안내 및 절차(교직과정 홈페이지 확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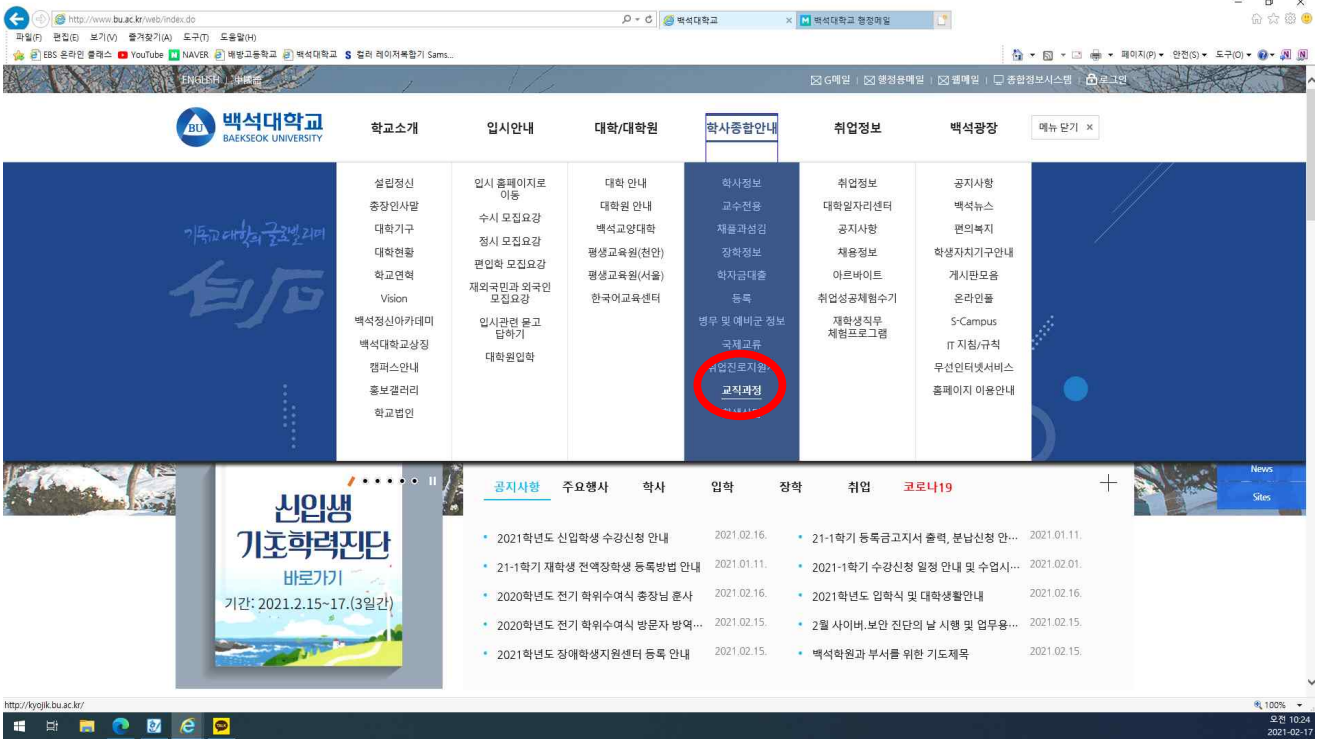
가. 교육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반드시 학부사무실에 제출 후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며,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학기말 사범학부에서 정하는 기간에 교육봉사활동이수확인서 및 교육봉사활동일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제출학기에 특별학점(2학점)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(교육실습 2학점으로 인정되며, 교육봉사활동 학점은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).

나.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

- 1) 대상기관: 유치원, 초, 중, 고등학교(취득하는 자격증의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)
- 2) 봉사내용: **교육목적의 봉사활동 내용**
- 3) 이수시기: 3학년 하계방학 ~ 4학년 하계방학
- 4) 이수절차:
기관선정 →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작성[붙임3] → 해당 기관에서 동의서 회신 → 학부 승인 후 교육봉사활동 실시 → 이수확인서 및 **교육봉사활동일지** 제출(60시간 이상 이수자)
- 5) 인정기준: 1일 최대 8시간이상, 서비스러닝, 사회봉사활동1, 2 등과 봉사실적 중복인정 불가
- 6) 관련양식: [양식 1, 2, 3, 4]참조
- 7) 전적대학에서 교육봉사 **2학점 취득 결과가 성적증명서에 표기 된 경우에만 면제**
- 8) 불인정
- 노인 문예교실, 노인대학, 어린이집, 돌봄센터, 도서관 도서 정리, 단순 청소 등

V

각종 양식([교직과정] 홈페이지 → 자료실에 탑재)



VII.

2025학년도 학과별 교육과정표 및 기본이수과목 일람표(첨부 1 참조)

1. 유아교육과
2. 특수교육과
3. 유아특수교육과
4. 특수체육교육과

VI

2026학년도 편입생 학사 안내(첨부 2 참조)